

사단법인 강북주거복지센터 정관

제정 2013. 8. 20.

1차 개정 2014. 4. 23.

2차 개정 2015. 3. 20.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센터는 “사단법인 강북주거복지센터(이하 ‘본 센터’)” 라 하고, 영문으로는 Gangbuk Housing Welfare Center(약식G.H.W.C)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센터는 평범한 서민들의 변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삼양주민연대의 활동과 정신을 이어받음으로써, 지역주민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안정적인 주거공간 확보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주거환경을 지원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안전망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소재지) ① 본 센터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둔다.

② 본 센터는 이사회 의결 및 주무관청에의 신고를 거쳐 각 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 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상담 및 사례관리사업
2. 지역 내 관련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주거복지 민관협력체계 구축사업
3. 지역주거복지 실태조사와 주거복지 지표 개발 및 정책의 협의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인 지역주거복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4. 맞춤형 직접지원사업의 실시로 지역사회 내의 무주택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근린주거여건) 향상을 위한 사업
5. 주거취약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한 주민조직화사업
6. 지역특성과 환경에 맞는 특화된 주거복지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7. 주거복지 인식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주민교육사업

8. 위의 제반사업에 필요한 지역단체 및 외부단체와의 연대 사업
9. 에너지주택활성화 사업 및 주택에너지 효율화 사업
10. 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 ① 회원은 본 센터의 취지에 동의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주거복지 활동 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회복지시설법에 의한 사회복지기관
 2. 비영리민간단체등록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3. 건설업 및 건설 자재업, 토목·건축업 및 건축 설비업 또는 인테리어업을 하는 자
 4. 세입자모임, 재개발관련 주민조직, 주거관련 협동조합 등 본 센터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주민당사자 모임
 5. 위 각 호의 단체에 근무하지만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의 개인
- ② 본 센터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 ① 정회원은 본 센터의 목적에 동의하고 제4조의 사업에 동참할 뜻과 능력을 가진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

② 준회원은 제4조의 사업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으나 본 센터의 목적에 동의하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

제7조 (회원가입과 탈퇴) ① 회원가입은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다.

② 회원 탈퇴는 탈퇴서를 작성하여 신청한다.

제8조 (회원자격의 박탈)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1년 이상 본 센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본 센터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
3. 정관, 제규정 및 의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②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경우에는 총회 소집 10일 전에 그 회원에 한하여 사유

를 통지하고 이사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 (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② 준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없으며, 그 외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서는 정회원과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

③ 전항의 권리를 갖기 위하여는 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① 정회원은 회비 또는 부담금 납부의무와 정관, 제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회비 또는 부담금의 액수 또는 비율,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회원은 본 센터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제11조 (의결권, 선거권의 행사) ① 단체가 회원일 경우 단체의 대표가 의결권, 선거권을 행사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대표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단체의 임직원이어야 한다.

③ 대리인은 대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회의 소집 2일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12조 (종류와 정수) 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이사장 포함)
3. 감사 1인 <신설 2014.4.23.>

제13조 (임기) ① 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이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센터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5조 (선출 등) ① 이사장 및 이사는 임기 만료 1개월 전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③ 선임된 임원은 그 취임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16조 (업무의 계속성) 총회 개최 지연 등으로 차기 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그 임원은 차기 임원 선출 때까지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7조 (이사장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 센터를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비상근이며, 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사장의 직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이사과 감사의 직무) ①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신설 2014.4.23.>

1. 법인의 재산상황 감사
2. 이사의 업무집행 상황의 감사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이나 불비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는 이를 총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4. 위 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총회 또는 이사회를 소집하는 일

③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9조 (직무대행) 이사장의 유고 시 또는 궐위 시에는 재적이사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20조 (고문 및 자문위원) ① 고문 및 자문위원은 각 5명 이내에서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이사회에 추천에 의하여 이사장이 위촉하고, 자문위원은 주거복지 관련 인사 및 사회저명 인사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고문 및 자문위원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 4 장 총 회

제21조 (구성 및 의결사항) ① 총회는 본 센터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2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1회,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소집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재적 정회원의 1/3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이사회에 의결로서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임시총회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통지기간을 단축하고 전화 통지를 할 수 있다.

④ 소집기간 내에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의 소집이 불가능 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 선출한다.

제23조 (총회의 의결)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4조 (의결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3. 법인과 의장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25조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회비, 기타 부담금의 결정
7. 기타 중요사항

제26조 (이사회 의 소집 등)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② 정기이사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기별 1회,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소집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재적이사 1/3 이상이 이사회 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소집기간 내에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 선출한다.

제27조 (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 ③ 이사회는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 ④ 이사회는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 6 장 각종 기구

제28조 (전문기구의 설치) ① 본 센터의 목적사업과 그 밖의 부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소 등 분야별 전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29조 (후원회) 본 센터 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별도로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후원회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30조 (각종 기구 규정) 각종 전문기구 및 후원회의 조직과 운영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사 무 국

제31조 (사무국) ① 본 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이사회 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사무국 직원의 임용 등

제3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보, 휴직, 직위해제, 복직, 명직을 말한다.
2. <직위>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3.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책임성과 난이성이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4.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 내에서의 보직의 변경을 말한다.
5. <승진>이라 함은 현재 보직되어 있는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6. <복직>이라 함은 휴직 또는 직위해제 중에 있는 직원에 상응한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3조 (정의) 임용이라 함은 직원의 채용, 승급, 전임, 해임을 말한다.

제34조 (임용권) 직원의 임용권은 이사장에게 있다.

제35조 (인사원칙) 직원의 채용, 승진, 승급, 배치전환, 휴직, 징계, 해고, 정년퇴직 등 인사사항의 결정은 공정성, 객관성을 기한다.

제36조 (임용의 원칙과 방법) ① 직원 임용은 본 센터가 시행하는 소정의 전형을 거쳐야 한다.

② 직원의 신규임용을 위한 전형방법은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으로 한다.

제37조 (신규채용)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의한다. 다만 이사장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치르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시험을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 할 수 있다.

② 임시 및 시간제 직원의 경우 별도의 사업계획에 따라 정한다.

제38조 (제출서류) 직원으로 임용된 자는 필요로 하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통(사진 포함)

2. 자기소개서
3. 관련 자격증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4. 주민등록등본 1통
5. 경력증명서 1통 (해당자에 한함)

제39조 (각종 규정) 기타 인사 및 직원 복무에 관한 운영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 9 장 재산 및 회계

제40조(회계연도) 본 센터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41조 (사업계획 등) ① 본 센터의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과 세입, 세출예산은 이사장이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 센터의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내에 이사장이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본 센터가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것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3조 (자산구분) ① 본 센터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재산으로 하며, 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기본재산 목록에 기재된 재산
2. 부동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제44조 (기본재산의 관리 및 처분) 기본재산을 취득,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 밖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 후 사무국에서 집행한다.

제45조 (운영재원) 본 센터의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교부하는 사업비
3. 사업 및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4. 특별회비, 찬조금, 출연금 및 현물 또는 기부금품
5. 기타 수익

제46조 (잉여금의 처리) ① 본 센터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본 센터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률 또는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한 재원은 해당 법률 또는 조례에 따른다.

제47조 (차입금) 본 센터의 사업수행 상 현금지출에 일시적인 부족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일시 차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제48조 (재정의 공개) 본 센터는 제45조에 의해 조달된 재원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을 총회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48조의 2 (정당활동의 금지) ① 본 센터의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 본 센터의 대표와 임직원이 정당추천의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경우에는 당해 선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퇴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장 보 칙

제49조 (법인의 해산에 관한 의결정족수에 대한 특례) 제23조 및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센터를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4분의 3 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0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 센터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51조 (정관변경) 본 센터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2조 (서면결의) 필요한 경우 서면결의를 할 수 있으나, 주무관청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할 수 없다.

제53조 (준용규정) 본 센터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2013. 07. 0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설립허가 후 등기를 마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4. 4. 23>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변경허가를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2. 25>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변경허가를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